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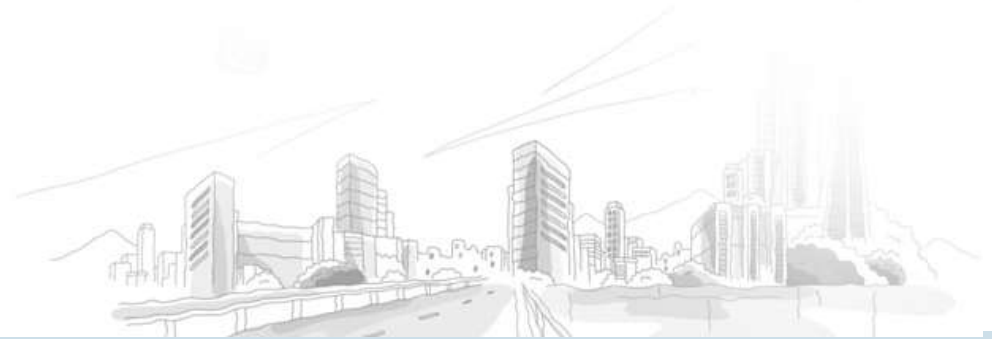


양평 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

2016. 04. 29.

도 시 국
(주 택 과)





CONTENTS

CONTENTS

- I. 양평 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결정안 제안사유
- II. 양평 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개요
- III. 양평 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현황
- IV. 도시관리계획 환원 결정도
- V. 우리구 검토의견

I. 양평 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결정안 제안사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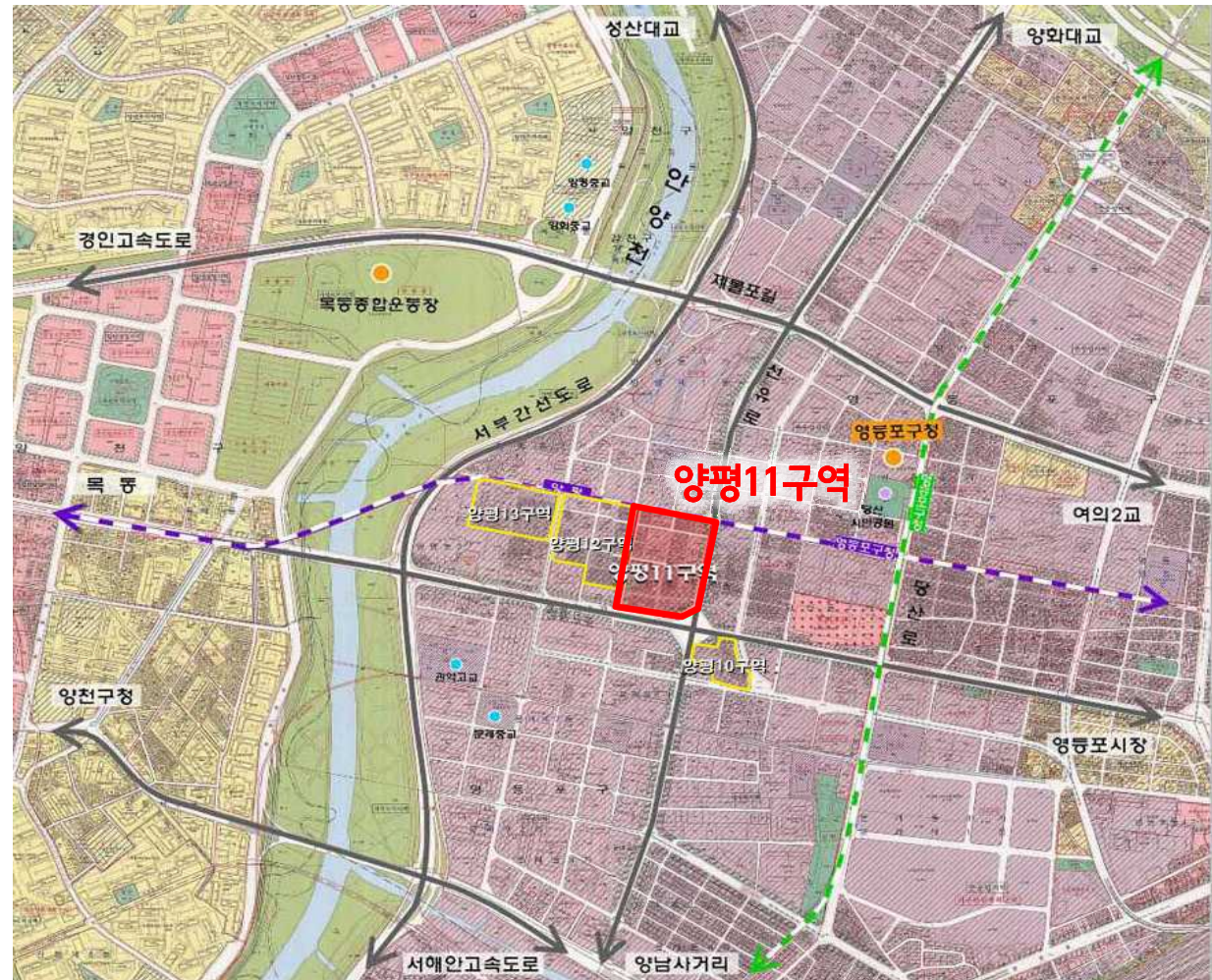
■ 제안 사유

•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 제1항에 의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하여 양평 제11도시 환경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해 같은법 제 4조의3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■ 사업 개요

양평 11 구역	위 치	영등포로13길 14일대
	면 적	46,727.6㎡
	용도지역	준공업지역
	용도지구	일반미관지구
	사업방식	도시환경정비사업

■ 위치도



II. 양평 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개요

추진경위

2009. 5. 14	• 정비구역 지정
2009. 9. 18	• 조합설립 인가
2010. 5. 27	• 시업시행 인가
2015. 11. 19	• 조합해산 신청
2015. 12. 4	• 조합장 의견청취
2015. 12. 10	• 조합설립인가 취소
2015. 12. 24 ~ 2016. 1. 25	•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

해제요건

구분	계	해산신청	해산반대 및 무응답
토지등소유자	242명	122명	120명
동의율	100%	50.41%	49.59%

✓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16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를 결정

✓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해제와 함께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됨.

III. 양평 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 현황

정비구역 - 해제

➤ 위치 : 영등포로13길 14일대(양평동1가 148-8)

면적	용적률	건폐율	시행방식	건립세대
46,727.6㎡	230%	60%	도시환경 정비사업	610세대

건축시설계획 - 해제

구분		위치	연면적 (㎡)	주된 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 (m)
명칭	면적(㎡)						
택지-1	22,774.5	143일대	86,600	공동주택	30 이하	230 이하	120m 이하
택지-2	6,061.5	118일대	23,400				
택지-3	4,911.0	116-1일대	30,600	산업시설	60 이하	400 이하	50m 이하
택지-4	337.2	216-2번지	870	노유자시설 (어린이집)	60 이하	400 이하	25m 이하
택지-5	508.4	217-17일대	2,400	종교시설	60 이하	400 이하	32m 이하
택지-6	254.3	217-1일대	350	노유자시설 (경로당)	60 이하	400 이하	25m 이하
택지-7	333.8	217-4일대	450	업무시설 (파출소)	60 이하	400 이하	25m 이하
택지-8	668.6	222-10일대	2,700	업무시설 (자치센터)	60 이하	400 이하	30m 이하
계	35,849.3	-	147,370	-	-	-	-

용도지역계획 - 변경없음(준공업지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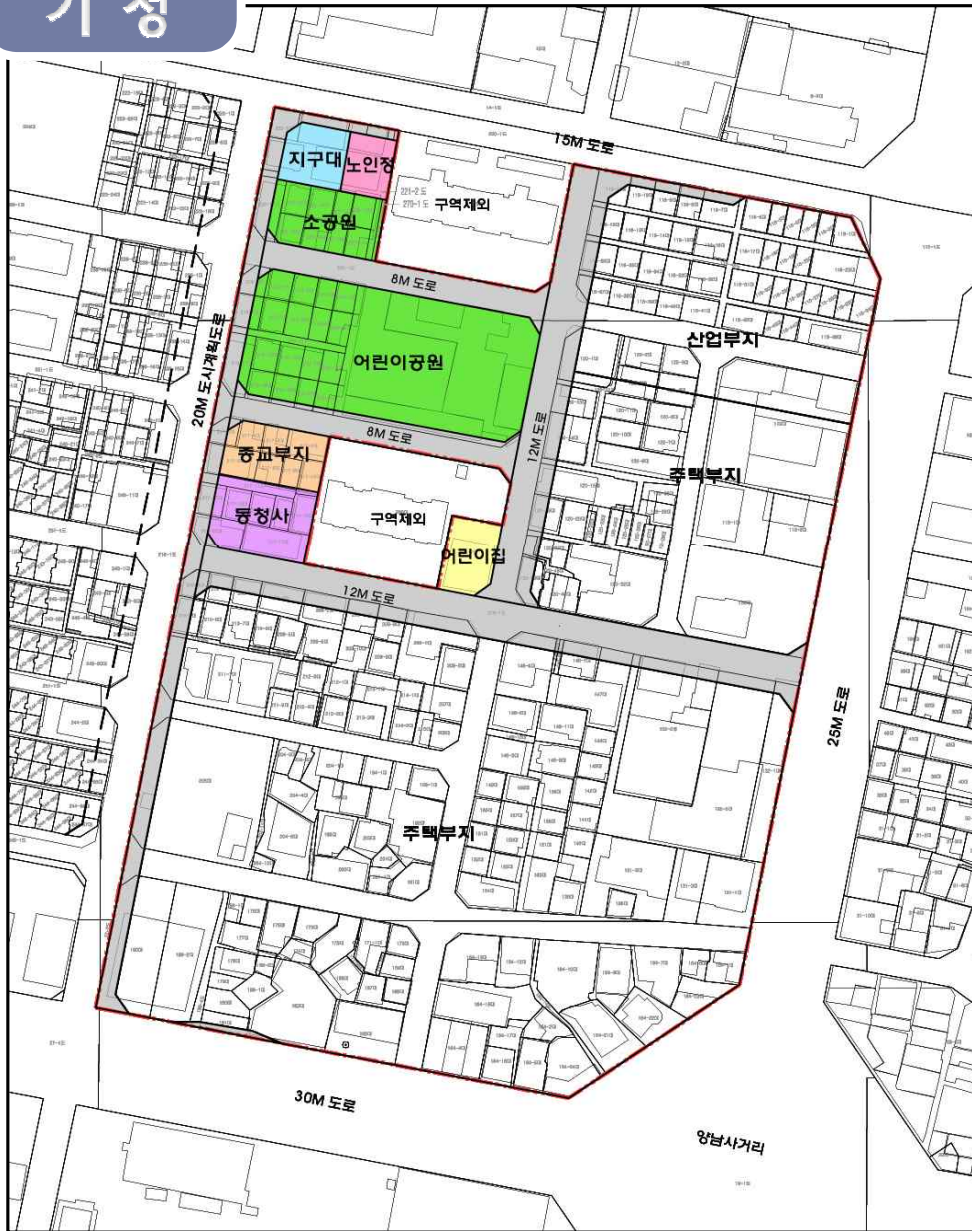
구분	면적 (㎡)		
	기정	변경	변경 후
준공업지역	46,727.60	-	46,727.60
총계	46,727.60	-	46,727.60

도시계획시설 - 환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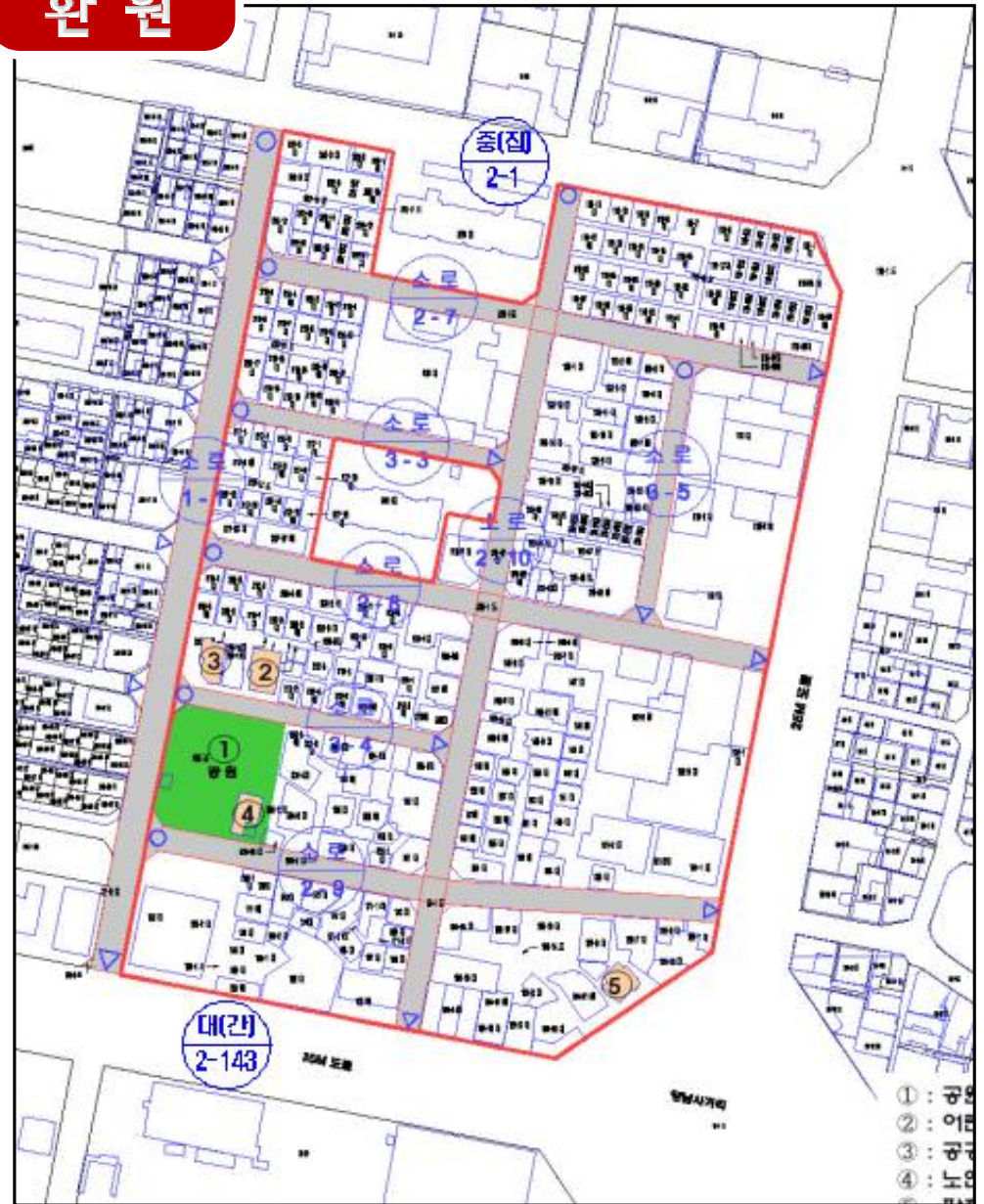
구분	면적(㎡)			비고
	기정	변경	환원	
구역면적	46,727.6	감) 46,727.6	-	구역 해제
소계	10,878.3	증) 385.8	11,264.1	
도로	7,072.4	증) 2,724.3	9,796.7	환원
공원	3,805.9	감) 2,338.5	1,467.4	환원

IV. 양평 제11도시환경정비구역 도시관리계획 환원 결정도

기 정



환 원



V. 우리구 검토의견

- 양평 제11도시환경정비구역은 구역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해산 신청이 접수되어 2015. 12. 10.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.
-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설 등은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 될 예정이나
- 현재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으로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16조의2 제1항에 의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에 의해 조합이 해산되어 정비구역해제 진행에는 법적 문제 없으나
-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정비구역해제 요청은 소송 결과에 따라 진행 할 예정임.



감사합니다